

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농축 특산물 등록 상표와 시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표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
- 시민의 이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은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사용토록 규정(제3조)
- 등록상표를 사용코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전에 시장에게 사용신청토록 규정(제4조)
- 등록상표의 사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(제5조, 제6조, 제7조)
- 시장의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민·형사상의 제반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음(제15조)

□ 검토의견

- 상표의 등록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
- 파주시의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대하여 사용 범위와 사용승인에 관한 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을 적법 타당하며 조문체계 등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